

경기콘텐츠진흥원 노동이사(비상임) 모집 재공고

경기콘텐츠진흥원은 참여·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이사(비상임) 직위에 대하여 최초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, 지원자 수가 1명(2배수 미달)으로 [노동이사 선거관리 규정]제8장제28조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 모집 공고를 실시하오니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7일

경기콘텐츠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1. 선임 직위 및 인원 : 노동이사(비상임) 1명
2. 임 기 : 임명일로부터 2년
3. 주요직무 :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부의안건 심의·의결 등
4. 자격요건 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직원)
 - 경기콘텐츠진흥원 소속 근로자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, 선거권이 있는 직원 10% 이상(14명)의 추천을 받은 자
 - 근로계약에 따른 잔여 재직기간이 노동이사의 임기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
 - 다음의 결격사유 및 제한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

결 격 사 유	1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, 미성년자 2. 피성년후견인 3. 피한정후견인 4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제 한 사 항	8.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 9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 10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

5. 지원 서류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11. 7. ~ 11. 23. 11:00
-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행낭 접수(마감일 11시까지 도착에 한하여 유효)
- 접 수 처 : 경기콘텐츠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
 - 주소 :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, 202동 9층 경기콘텐츠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(인사노무팀)
 -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
 - 후보자 추천서 1부(14명 이상) ※ 복수추천 가능하며, 본인 추천 가능
 - 직무수행계획서(3매 이내)
 - 결격사유 확인서 1부
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 - 재직증명서 1부
 - 선거유인물 1부

6. 선거일정

- 입후보자 자격심사
 - 입후보 신청자에 대한 응모자격요건 확인 후 입후보자로 확정(선관위)
 - ※ 결격사유 조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이전 실시 예정
- 선거일 : 2023. 11. 30. (10:00~17:00)
 - 선거권자 :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
 - 선거원칙 :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 및 근로자 1인 1투표
 - 선거방법 : 전자투표(온라인) ※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
 - 후보선출 : 다득표 순 임원추천위원회 결과 통보
 - ※ 입후보자 2명 미달 시 재공고 실시한 것으로, 재공고 시에도 1명 응모 시 단독 입후보 진행
 - ※ 단독 입후보 시,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후보 선출
- 임명제청
 - 선거 결과를 토대로 노동이사 후보자 2배수 이상(단독 입후보 시 1배수)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도지사가 결정 ※ 최종 임명자 발표 : 개별 통지

7. 보수수준

-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, 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음

8. 기타사항

-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공모 실시
-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할 수 있음
- 입후보자 중 노동이사 임용 시, 다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해당 직을 사임하여야 함
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
-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 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

- 추후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하여 논란 혹은 문제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
-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선거금지사항에 대한 신고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, 인사노무팀(032-623-8014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7일

경기콘텐츠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